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1.8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주유소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 주유소 의무가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 가입시기

- 신규주유소
 : 시설 사용 개시전 가입



✓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1사고당 10억원 까지 보장

- 매출액 9~10억 기준, 연간보험료 95,000원
- 매출액 15~20억 기준, 연간보험료 131,000원
 * 단,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유소 이용객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당무한)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 까지 보장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

+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8. 8.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 태 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특수건물이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주유소는 가입 제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주유소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공유시설에 위치한 주유소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특수건물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자주 묻는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상한도*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유지 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

[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가입 문의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Heungkuk
Life Insurance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수협

1588-4119



MG새마을금고

1599-9010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The K 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신협

1544-3030



MG손해보험

1588-5959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